

2014. 6. 10.

특별교섭 보충 합의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순천의료원지부

2014년 특별교섭 보충 합의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본부 순천의료원지부는 특별교섭을 통하여 아래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대표자 및 유일 교섭단체】 "삭제"

제19조 【시설편의 제공】 의료원과 조합은 상호 협의 하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 활동상 필요한 기계, 비품, 통신 기타시설을 제공한다.

제40조 【유산휴가】 의료원은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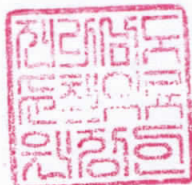
- ① 임신 11주 이내 : 당해일로부터 5일까지
- ②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 당해일로부터 10일까지
- ③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당해일로부터 30일까지
- ④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당해일로부터 60일까지
- ⑤ 임신 28주 이상 : 당해일로부터 90일까지



제73조 【재해대상자 업무변경】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라도 종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 업무에 종사케 한다.

2014년 6월 10일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원장 이 창 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순천의료원지부장 송 찬

